

# 2023 세법학 I, II 8판1쇄 정오표

2023년 5월13일 현재까지 세법학에 필요한 오류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추가로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학원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세법학 I

페이지	위치	수정전	수정후
2-311	(5) 2) 제목	2) 차액결제거래 장외과산상품	2) 차액결제거래 장외과 <b>생</b> 상품
3-169	상6	㉔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 정하는 사람	㉔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 정하는 사람( <b>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b> )
3-264	사례 1 박스 3. 내용	3. (주)환성의 A사업부를 ~ 시가는 각각 2,000,000원과 6,000,000원이다.	3. (주)환성의 A사업부를 ~ 시가는 각각 <b>3,000,000원</b> 과 <b>2,000,000원</b> 이다.
3-266	사례 2 2. 분개	(차) 토 지 100,000,000 (대) 자 본 금 400,000,000 기 계 장 치 2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00 건 물 300,000,000	(차) 토 지 100,000,000 (대) <b>부 채 100,000,000</b> 기 계 장 치 200,000,000 자 본 금 400,000,000 건 물 300,000,000 <b>주식발행초과금 100,000,000</b>
3-330	4. 제목	4.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b>5.</b>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 2. 세법학 II

페이지	위치	수정전	수정후
1-234	㉒ 내용	㉒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공급하는 자가 해당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b>개정</b>	㉒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b>포함하지 않아야 함</b> 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b>해당 금액을 판매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b> <b>개정</b>
1-301	1. 내용 2줄 2. 내용 3줄 박스	정부에서는 지난 2010년 <b>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b> 위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였다. ~ 23.7%를 지방세로 ~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b>76.3%를 부가가치세로, 23.7%를 지방소비세로</b> 한다. $\text{지방소비세} = (\text{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text{공제} - \text{감면세액} + \text{가산세}) \times 23.7\%$	정부에서는 지난 2010년 <b>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b> 위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였다. ~ <b>25.3%</b> 를 지방세로 ~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b>74.7%를 부가가치세로, 25.3%를 지방소비세로</b> 한다. $\text{지방소비세} = (\text{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text{공제} - \text{감면세액} + \text{가산세}) \times \mathbf{25.3\%}$
2-92	2. 내용 3줄	~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까지	~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b>용도</b> 증명서의 제출기한까지
2-123	2. 제목 2. 내용 2줄	2. 승인 및 통지 ~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b>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b> (개소령30 ③).	2. 승인서 <b>발급</b> ~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b>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b> (개소령30 ③).
3-90	관련 판례 1. (2) 내용	(2) 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의 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은 <b>상속 외의 무상취득세율인 3.5%</b> 의 세율이 적용된다.	(2) 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의 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은 <b>4%</b> 의 세율이 적용된다.
3-100	(3) 1) 내용 1줄	「지방세법」은 <b>별장·골프장·</b>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은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하여 종전 취득세의 5배를 부과해왔으며,	「지방세법」은 <b>골프장·</b>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은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하여 종전 취득세의 5배를 부과해왔으며,
3-101	2) ① 내용	<b>① 별장 내용 전체 삭제</b>	
3-103	3) ② ㉔ 내용	㉔ 토지나 건축물을 ~ <b>별장, 골프장, 고급주택</b> ~	㉔ 토지나 건축물을 ~ <b>골프장, 고급주택</b> ~

3-104	㉠ 내용	㉠ 고급주택, <b>별장, 골프장</b>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	㉠ 고급주택, <b>골프장</b>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										
3-106	4. 내용	(아래 1)로 내용 교체											
3-127	해답 물음 2 (2), (3) 내용	내용 교체	(2) 위 사례에서 <b>올의 유상승계취득으로 보는 과세표준은 채무액(시가인정액 한도)이고, 감의 무상 승계 취득으로 인한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에서 채무액을 뺀 잔액으로 한다.</b>										
3-210	VI. 표	수정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표준세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2) 주 택</td> <td>① <b>별장(부속토지 포함)</b></td> <td style="text-align: center;"><b>4%</b></td> </tr> <tr> <td>②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한정)</td> <td>0.05~0.35%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td> </tr> <tr> <td>③ 위 외의 주택(부속토지 포함)</td> <td>0.1~0.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td> </tr> </tbody> </table>	구 분		표준세율	(2) 주 택	① <b>별장(부속토지 포함)</b>	<b>4%</b>	②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한정)	0.05~0.35%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③ 위 외의 주택(부속토지 포함)	0.1~0.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 분		표준세율									
(2) 주 택	① <b>별장(부속토지 포함)</b>	<b>4%</b>											
	②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한정)	0.05~0.35%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③ 위 외의 주택(부속토지 포함)	0.1~0.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수정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표준세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2) 주 택</td> <td>①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한정)</td> <td>0.05~0.35%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td> </tr> <tr> <td>② 위 외의 주택(부속토지 포함)</td> <td>0.1~0.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td> </tr> </tbody> </table>	구 분		표준세율	(2) 주 택	①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한정)	0.05~0.35%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② 위 외의 주택(부속토지 포함)	0.1~0.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 분		표준세율											
(2) 주 택	①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한정)	0.05~0.35%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② 위 외의 주택(부속토지 포함)	0.1~0.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3-212	(3) ① 내용	① 취득세 중과대상인 <b>별장: 과세표준의 4%</b>	삭제										
3-232	5. 내용 추가	(아래 2) 내용 추가하고 기존 5는 6으로 기존 6은 7로 변경											
4-7	박스 그림	수정전	<div style="text-align: center;"> <p>〈조세지출 기본구조〉</p> </div>										
		수정후	<div style="text-align: center;"> <p>〈조세지출 기본구조〉</p> </div>										
4-56	(2) 2) 내용 3줄	~ 범위 중 ①부터 ⑦, ⑨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범위 중 ②부터 ④, ⑨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63	(2) 2) ④ 내용	④ ③의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④ ②의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4-77	(3) 1) 표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공제율 개정</th> </tr> <tr> <th>중소기업</th> <th>중견기업</th> <th>일반기업</th> </tr> </thead> <tbody> <tr> <td>③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분*</td> <td>25%</td> <td>15%</td> <td>15%</td> </tr> </tbody> </table>	구 분	공제율 개정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③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분*	25%	15%	15%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공제율 개정</th> </tr> <tr> <th>중소기업</th> <th>중견기업</th> <th>일반기업</th> </tr> </thead> <tbody> <tr> <td>③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분*</td> <td>16%</td> <td>8%</td> <td>8%</td> </tr> </tbody> </table>	구 분	공제율 개정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③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분*	16%	8%	8%
구 분	공제율 개정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③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분*	25%	15%	15%																						
구 분	공제율 개정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③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분*	16%	8%	8%																						
4-121	4. (2) ② 내용	② ~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일 것(조특령27의7 ⑥).	② ~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일 것(조특령27의7 ⑥).																						
4-122	(6) 1) ① 내용	①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①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6) 2) 박스	$\text{징수 또는 납부 세액} = \text{납부유예받은 세액} \times \frac{\text{감소한 지분율}}{\text{상속개시일 현재 지분율}}$	$\text{징수 또는 납부 세액} = \text{납부유예받은 세액} \times \frac{\text{감소한 지분율}}{\text{증여일 현재 지분율}}$																						
4-252	3) ② ③ 추가	<b>㉔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국채 및 지방채</b>																							
4-299	(2) 내용 5줄	~ 사내유보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22%(높은 세율)로 한 번 과세되었으나, ~ 귀속되어 소득세율 40%(최고세율)로 과세됨에 따라 ~	~ 사내유보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21%(높은 세율)로 한 번 과세되었으나, ~ 귀속되어 소득세율 45%(최고세율)로 과세됨에 따라 ~																						
4-310	해설 2.	(1) 거주자군 1) 사업소득금액 : $186,800,000 \times (60\% + 20\%) = 149,440,000$ 2) 이자소득금액 : $10,800,000 \times (60\% + 20\%) = 8,640,000$ 3) 양도소득금액 : $200,000,000 \times (60\% + 20\%) = 160,000,000$ (2) 내국법인군 $413,000,000 \times 20\% = 82,680,000$	(1) 거주자군 1) 사업소득금액 : $186,800,000 \times (60\% + 20\%) = 149,440,000$ 2) 이자소득금액 : $30,000,000 \times (60\% + 20\%) = 24,000,000$ 3) 양도소득금액 : $200,000,000 \times (60\% + 20\%) = 160,000,000$ (2) 내국법인군 $413,400,000 \times 20\% = 82,680,000$																						
	해설 3.	(1) 이과량 1) 사업소득금액 : $186,800,000 \times 60\% / 80\% = 140,100,000$ 2) 이자소득금액 : $10,800,000 \times 60\% / 80\% = 8,100,000$ 3) 양도소득금액 : $200,000,000 \times 60\% / 80\% = 150,000,000$ (2) 김노량 1) 배당소득금액 : $(186,800,000 + 10,800,000 + 200,000,000) \times 20\% / 80\% = 99,400,000$	(1) 이과량 1) 사업소득금액 : $149,440,000 \times 60\% / 80\% = 112,080,000$ 2) 이자소득금액 : $8,640,000 \times 60\% / 80\% = 6,480,000$ 3) 양도소득금액 : $160,000,000 \times 60\% / 80\% = 120,000,000$ (2) 김노량 1) 배당소득금액 : $(149,440,000 + 8,640,000 + 160,000,000) \times 20\% / 80\% = 79,500,000$																						

〈아래 1〉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중과세로 환원됨.

#### 4. 법인의 주택 취득 등에 대한 중과

##### (1) 개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세한다(지법13의2).

##### (2) 중과세 대상

대도시	납세의무자	과세시기
① 법인(「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이 주택 취득	법인	제한없음
②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취득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 취득	개인 (1세대)	제한없음
③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취득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 취득	개인 (1세대)	제한없음
④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상속 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	개인	제한없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취득(①,②,③)** 또는 **무상취득(④)**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지법13의2 ①②).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법 13의2 ④).

- ① **법인**(「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 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② **1세대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부사항	일시적 2주택
<p>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b>종전 주택</b> 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b>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b>로 다른 1주택(이하 “<b>신규 주택</b>”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b>3년 이내</b>에 <b>종전 주택</b> 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 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지령28의5 ①).</p>	

- ③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④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상속 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지령28의6 ②).
  - ㉠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상속 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 「법인세법」 적격합병 등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으로서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3) 중과세율

#### 1) 적용 세율

- ① 법인(「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 포함)이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지법13의2 ① 1).

$$\text{중과세율} = \text{표준세율}(4\%) + \text{중과기준세율}(2\%) \times 4$$

- ②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2배로 한다(지법13의2 ① 2).

$$\text{중과세율} = \text{표준세율}(4\%) + \text{중과기준세율}(2\%) \times 2$$

- ③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지법13의2 ① 3).

$$\text{중과세율} = \text{표준세율}(4\%) + \text{중과기준세율}(2\%) \times 4$$

- ④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상속 외 무상 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지법13의2 ②).

$$\text{중과세율} = \text{표준세율}(4\%) + \text{중과기준세율}(2\%) \times 4$$

- ⑤ ①, ②, ③, ④ 규정과 사치성 재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①, ②, ③, ④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지법 13의2 ③).

- ① & 사치성재산 : 중과세율 = 표준세율(4%) + 중과기준세율(2%) × 8
- ② & 사치성재산 : 중과세율 = 표준세율(4%) + 중과기준세율(2%) × 6
- ③ & 사치성재산 : 중과세율 = 표준세율(4%) + 중과기준세율(2%) × 8
- ④ & 사치성재산 : 중과세율 = 표준세율(4%) + 중과기준세율(2%) × 8

## 2) 세율 적용

주택 취득 등 중과세 대상 주택이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여 추가로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표준세율(4%)에 중과기준세율의 8배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지법20 ②).

---

<아래 2>

## 5. 1세대 1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 (1) 개 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의 재산세액(해당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함께 부과하는 지방세를 포함)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지법118의2 ①).

**취지**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60세 이상 고령 및 5년 이상 장기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납부유예를 통하여 완화시켜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 (2) 납부유예 적용 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 1)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 한정)의 **소유자**일 것
-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 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 4) 해당 연도의 **납부유예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 5)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 (3) 신청 및 허가

#### 1) 납부유예 신청

납세의무자는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지법118의2 ①).

#### 2) 납부유예 허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유예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지법118의2 ②).

### (4) 허가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 재산세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지법118의2 ③④⑤).

- 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 ②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③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④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⑤ 「지방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 (5)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유예를 허가한 날부터 (4)에 따라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법118의2 ⑥).

### 6. 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지법119).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이라 함은 재산세 고지서상에 병기고지된 세액을 제외한 재산세만을 지칭한다(운영예규119-1).

### 7.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 (1) 합산배제 특례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개별단체)가 소유한 토지로서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단체별로 합산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다(지법119의 3 ①).

#### (2) 합산배제 신청 절차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납기개시 20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지령116의 3 ③).

합산배제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단체별 합산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세액이 추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전자적 통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관계가 변동하기 전까지는 합산배제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지령116의 3 ④⑤).